2016년 3월 근속승진 시행계획

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에 의거 7급이하 직원 중 근속승진(자동승진) **소요기간 경과자에 대하여 승진을 실시함으로써 직원 사기진작 및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**

1. 관련근거

○ **단체협약 제17조(근속승진 및 대우수당)**

※ 근속승진 시행시기(분기 1일 → 월 1일) 및 소요년수 산정기준일 변경

○ **근속승진 시기 및 기준일 변경(사장방침 제108호, '14. 2.27)**

○ **인사규정 제26조(승진소요 최저근무기간)**

○ **인사규정 제28조(승진방법)**

○ **인사규정 제30조(승진 및 승급의 제한)**

○ **인사규정시행내규 제21조(승진 및 승급시기)**

2. 근속승진 절차 및 방법

○ **근속승진 시행시기 및 소요년수 산정 기준일** (단체협약 제17조)

- 승진시기 : 매월 1일
- 기 준 일 : 승진시기 전월 말일

○ **근속승진 절차**

○ **승진후보자명부 작성** --- 전산시스템 자동추출 (본건 결재후 명부 추출)

- 승진소요 최저근무기간 산정기준일 : '16. 2. 29
- 7급 → 6급 : **3년 9월 경과자**(승진소요 최저근무기간 1년6월의 2.5배 경과자)
- 8(9)급 → 7(8)급 : **2년 경과자**(승진소요 최저근무기간 1년의 2배경과자)

3. 직급별 근속승진 소요년수 경과자 현황

(단위 : 명, 2016. 2.23 현재)

구 분		계	사무	승무	차량	기술	시설	특수
7급	현 원	118	39	16	21	30	12	0
	소요년수 경과자	16	9	1	2	3	1	-
8급	현 원	134	48	58	2	13	9	4
	소요년수 경과자	0	-	-	-	-	-	-
9급	현 원	224	82	62	23	37	17	3
	소요년수 경과자	3	1	-	-	2	-	-

※ 인사규정 제30조 승진제한사유 해당자(징계처분, 휴직, 직위해제 등)는 승진 제외

4. 승진제한 기준 (인사규정 제30조)

○ **징계처분, 직위해제 및 휴직 중에 있는자** (공상휴직은 관련없음)

○ **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**

(단, 금품 및 향응수수, 공금의 횡령·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인 경우 각 3개월 가산)

- **견 책 : 6개월** (견책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)
- **감 봉 : 1년**
- **정 직 : 1년 6개월**
- **강 등 : 2년 6개월**

※ 징계처분에 의해 승진제한 중에 있는 직원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제한기간 산정은 당초 처분에 의한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

5. 승진임용 예정일 : 2016년 3월 1일자

6. 행정 사항

○ **관련부서**(경영감사처, 지도조사처) **조회를 통한 적격여부 검증 후 승진임용**

○ **승진대상자로 결정되더라도 승진실시 기준일**('16.3.1) **현재 인사규정 제30조에 의한 승진제한 사유에 포함될 경우 승진임용 제외. 끝.**